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29호 2022. 6. 1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81호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삼척시 고시 제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8
- 삼척시 고시 제83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11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58호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 삼척시 공고 제668호 신조 공인 공고 ----- 29
- 삼척시 공고 제669호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30
- 삼척시 공고 제669호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규칙안
----- 3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7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45	2022060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 방식사용 (덕산해변길 분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45	2022060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덕산해변길분기)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리 253-2	1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해법1길 45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리 25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신해법1길 45	2022060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덕신해법길분기)	덕산웰컴센터		

삼척시 고시 제2022-8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의 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나. 계획내용

- 소로1-5 노선 연장 및 연장구간 폭원 확장
: 기존 소로2-4의 전두교 구간 폭원 확장과 해당 구간 편입
- 그 외 접속도로의 경미한 사항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게재

라. 이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351	중로2-1 전두리 174-8도	소로2-4 전두리 40-42도	일반 도로		1974. 7. 19. (강원도고시 제2697호)	2018. 4. 13. (삼척시고시 제49호)
변경	소로	1	5	10 ~20	국지 도로	390	중로2-1 전두리 174-8도	소로2-4 도계리 407천	일반 도로			전두안길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56	대로2-2 도계리 374-13도	소로2-4 도계리 407천	일반 도로		1998. 11. 20. (삼척시고시 제82호)	2020. 6. 19. (삼척시고시 제97호)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56	대로2-2 도계리 374-13도	소로2-4 도계리 407천	일반 도로			도계강변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98	소로2-4 도계리 407천	소로1-3 도계리 407천	일반 도로		2000. 12. 8. (삼척시고시 제109호)	2010. 7. 16. (삼척시고시 제48호)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98	소로2-4 도계리 407천	소로1-3 도계리 407천	일반 도로			도계강변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4	소로2-1 도계리 387-16도	소로1-5 도계리 40-42도	일반 도로		1974. 7. 19. (강원도고시 제2697호)	2020. 6. 19. (삼척시고시 제97호)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55	소로2-1 도계리 387-16도	소로1-5 도계리 407천	일반 도로			도계강변길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5호선	소로1-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연장 및 연장 구간 폭원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 10m → 10~20m - 연장: 351m → 390m (증 3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도 개선을 위한 소로2-4호선 전두교 구간 폭원 확장과 확장 구간의 상위도로(소로1류) 편입
소로2-2호선	소로2-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모퉁이(가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5호선 폭원·연장 확장구간에 기존 도로모퉁이 포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소로2-3호선	소로2-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모퉁이(가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5호선 폭원·연장 확장구간에 기존 도로모퉁이 포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소로2-4호선	소로2-4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소로2-1 도계리 387-16 ~ 소로1-5 도계리 407 - 연장: 94m → 56m(감 3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교 폭원 확장에 따른 해당 구간의 상위도로(소로1-5호선) 편입

삼척시 고시 제2022 -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35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79	20220610	건물신축	20090626	공양왕릉 (문화재) 명칭 활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촌리 35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79	20220610	건물신축	20090626	공양왕릉 (문화재) 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35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79 1건	20220610	건물신축	20090626	공양왕릉(문화재) 명칭 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83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유원지) 지형도면 고시

1. '맹방 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승인'(삼척시 고시 제2022-80호, 2022. 6. 10.)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8조의 규정으로 의제 변경·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유원지)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삼척시장

가. 시설명: 종로1-4, 유원지1(맹방유원지)

나. 위치: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 일원

다. 규모

- 종로1-4: 폭원 20~25m, 연장 2,197m
- 유원지1: 면적 779,988㎡

라. 지형도면: 토지이음(www.eum.go.kr) 등재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658호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삼척시장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활용 및 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안 제 4조)
- 다.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안 제9조)
- 라. 용역 실명제 (안 제10조)
- 마. 연구 과제의 선정 및 변경(안 제11조 ~ 안 제13조)
- 바. 연구결과의 평가·활용 및 공개(안 제14조 ~ 안 제15조)
- 사. 수당 등(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27일까지 삼척시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 2) 전화 : 033-570-3711
 - 3) 팩스 : 033-570-3131
 - 4) 전자우편 : azsx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삼척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위원회 설치)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과장급 이

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삼척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2. 지방행정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담당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

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 발주부서 실·국장, 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3조(응역과제의 변경)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응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응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응역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응역 완료후 6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 활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응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응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제명			
신청부서	과제담당관(실·과·소장)	직급	성명
	담당		
	주무관		
연구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연구기간	~ (개월)		
예산항목	[] 포괄 연구개발비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수렴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과제명				
신청부서		과제담당관(실·과·소장)	직급	성명
		담당		
		주무관		
연구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연구기간	~ (개월)			
예산항목	[] 포괄 연구개발비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산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			
	유사·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수렴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정책연구 과제 선정 심의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관련 선행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			
3			
4			
5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 연구 필요성	

[별지 제4호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예산 구분	1. []포괄 연구개발비
			2.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담당관	직급·성명	담당공무원	직급·성명
심의 위원	1. 내부위원 (명) 2. 외부위원 (명)		
연구 방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수의계약 사유			

연구자	
선정 사유	
심의 결과	
비고	

* 심의 확인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OO부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 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삼척시장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 방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경쟁계약 2. []수의계약			
연구 기간			~	(개월)
연구 결과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への 충실성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타사항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평가자 확인	구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명	(서명)		(서명)
평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소	
	참석자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개월)		
활용구분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연구목적			
연구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삼척시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삼척시장 귀중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668호

신조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삼척시장

- 1. 등록 사유 :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 2. 등록 연월일 : 2022. 6. 9.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cm)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장 당선인인	3.0×3.0 (정방형)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삼척시장직 인수위원장인	3.0×3.0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2022-669호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삼척시장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주택법」 제84조(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운영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경우 전액 농협 자금으로 조성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삼척시장(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대학로 81, 삼척시청 건축과
- 2) 전화 : 033-570-3146
- 3) 팩스 : 033-570-3473
- 4) 전자우편 : kjso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폐지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명: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669호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삼척시장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 「주택법」 제84조(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운영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경우 전액 농협 자금으로 조성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삼척시장(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대학로 81, 삼척시청 건축과
 - 2) 전화 : 033-570-3146
 - 3) 팩스 : 033-570-3473
 - 4) 전자우편 : kjso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폐지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